

김정균 칼럼위원의 중국 심천 여행기② 민속촌에서 '동북아공정' 생각



중국 민속촌에서 '동방의상'을 공연하는 모습.

심천에 도착하자마자 허기를 채우기 위해 민속촌 옆 '한국요리'라는 간판이 붙은 음식점에 들렀다. 별로 반가운 기색이 없는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조명도 없는 컴컴한 한쪽 구석 식탁으로 갔다.

도우미가 TV를 켜는 순간 한국의 YTN이 나온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쓸 기회가 없어 갑갑했던 터라 한국 뉴스가 나오니 반가웠다. 벽 한쪽에는 A4용지에 '주류반입 금지라고 조잡하게 쓴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여행경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에서 술을 직접 사가지고 와서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화장실에 갔으나 청소상태가 10년전 우리 한국의 화장실 모습이다. 한국요리 전문점 이라고는 하나 도우미는 한국말이나

첫 무대 조선족 의상 등장 ... 공안체제에 익숙

영어를 전혀 못해 가이드의 도움을 얻어 비빔밥을 시켰는데 썩 맛있지는 않았지만 양은 한국의 두배였다. 인심이 후한 것일까? 아니면 과거 한국처럼 음식을 양으로 따지는 음식문화 때문일까? 여행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렸지만 인심이 후한 중국은 아니었다.

식사 후 민속촌을 관람했다. 여기도 공안복장을 한 안내원이 복직된다. 600여명의 배우가 등장해 중국 각 지역 및 민족의 전통의상을 화려하게 표현한 <동방의상>이라는 무용시를 관람했다. 좌석 앞뒤가 또 시끄럽다. 중국 민족의 패션을 알리는 무용시라고 하여 호기심에 무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리랑 음악과 함께 화려한 조선족의 의상이 처음 등장한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첫 무대에 등장시킨 듯하다. 청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박수를 쳐댄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중국의 '동북아공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기분이 언짢았다. 중국민족의 92%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의 의상을 제쳐두고 55개의 소수 민

족 중에서도 7위정도 밖에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더우기 아직도 소수민족으로 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는 조선족의 의상이 왜 그들의 첫 무대에 등장할까?

중국은 현재 중국 동북변경 지방의 옛고조선, 발해, 고구려, 만주와 관련된 한국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역사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공정이라는 것이 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하나로서, 조선족 역사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서 중국사에 포함되며, 조선족의 조국은 한국이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내용임을 상기한다면 첫 무대에서의 조선족 의상 시현은 그들의 이러한 흥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옆 자리에 앉은 한 여자는 데리고 온 꼬마가 자면서 아내의 자리를 자꾸 침범하는데도, 대화가 안되어 몸짓으로 눈치를 주는데도 무심하게 공연을 관람한다.

2부 공연인 <용봉무중화>는 중국의 역사를 무용, 음악, 서커스, 마술, 일루미네이션 등으로 표현한 대형 중화예술 역사시로서 웅장한 무대와 미녀들의 출현은 대국 중국

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무대밖과 객석사이로 말을 탄 기마병들이 달리고 대형대표가 수레바퀴로 지나가면서 지축을 울릴 정도로 큰 공음을 울리면서 광광 쏘아댄다.

공연 시작전 광대가 나와서 재롱을 피우는데 10분이 지났을까? 공안복장을 한 안내원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 들어가라고 손짓하고 광대는 안들어가고 도망다니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그 모습을 보고 관람객들 대부분은 파안대소 한다. 한국 같으면 공연장에 경찰이 나타나서 재미있는 모습을 연출하려 하였다면 관중들은 대부분 얼굴을 찌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중국의 공안체제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한 중국민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였다.



김정균 칼럼위원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떠한 것인지



문)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갑의 토지 50평을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갑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갑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요?

답) 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

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

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갑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갑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주택이 멸실(滅失)한 때에도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대우건설(04704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중기적인 방향성을 두고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메이저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밀그림으로 그려 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들 역시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구간으로서 작은 등락을 만들어가며 종목별로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차트를 놓고 추세선을 그려보면 2040~2050선에서 강력한 저항의 자리로 표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항임을 알 수 있는 위치다. 결국 이 구간을 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 즉 돈이 필요한 구간이기에 그들의 머뭇거림이 지수의 회복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수는 2월 20일에 고점을 형성한 모습이지만 종목들은 2월 10일 이후 이미 가격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선 상황이었다. 대형

주의 위치를 살펴보다도 60당수 나타나고 있으며 초대형 주들에서도 20일선을 이탈한 종목들이 있다. 파생시장과 맞물려서 지수를 묶어두기는 하지만 이미 종목들의 조정은 2월에 진행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위치에서 지수가 하락하고 조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선 조정을 받은 종목들의 놀림목 반동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순환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서 단기 낙폭이 컸던 업종의 종목에서 반등을 이끌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주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대우건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유동성에 의한 장세이기에 돈의 흐름에 따른 매매를 해야 하는 구간이고 기업분석은 생각한다. 대우건설에 대한 매매기준은 10,25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10,800원 이하에서 이번 주 매수에 가담할 수 있겠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